

직위해제처분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2구합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공무원신분
원고	□□□	피고	인천광역시교육감
판결선고일	2022. 10. 28. 원고패	비고	
사건개요	<p>○ 원고는 ○○○○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, 2021. 11. 3. 미술동아리 학생들과 교내 축제 때 진행할 프로그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타투를 하겠다고 하자,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피해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음. 이 사건은 2021. 12. 24. 경찰서로부터 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 위반으로 수사 개시가 통보되어, 우리 교육청은 2021. 12. 28.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음.</p> <p>○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한 말은 교육적인 견지에서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 성희롱적인 표현이 아니고,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'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'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.</p>		
주 문	<p>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</p> <p>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		
판결요약	<p>○ 원고는 부적절한 언어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'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'에 해당한다.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,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며, 아동.청소년과 대면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보다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크다.</p>		
결 론	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